

[별첨1] 정관일부변경의 건

변경전	변경후	비고
<p>제 2 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36> (생략) 37. 위 각호와 관련된 임대, 도소매 및 수출입업 38.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39. 위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수출입 무역업 일체</p>	<p>제 2 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36> (동일) 37. 위성 통신장비의 개발 제조 판매 임대 및 서비스업 38. 위성서비스 기간 통신사업 등 일체 39. 항공기용 부품, 비철금속, 합성수지 배터리 등 제조 판매 및 재활용사업 40. 특수 합금 및 소재 등의 설계, 주조, casting 및 주물 및 제조업 41. 위 각호와 관련된 임대, 도소매 및 수출입업 42.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43. 위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수출입 무역업 일체</p>	<p>사업 목적 추가</p>
<p>제 9 조(신주인수권) ① (생략)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7>(생략) ③~④(생략)</p>	<p>제 9 조(신주인수권) ① (동일)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7>(동일) 8. 기타 긴급한 차입금 상환, 기존사업의 한계로 인한 신규사업 추진 또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 이사총수의 4분의 3이상 (75%)찬성의 이사회결의로 신주인수권을 할인발행할 때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③~④(동일)</p>	<p>조문 추가</p>
<p>제 10 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경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p>	<p>제 10 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경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p>	<p>조문 정비</p>

<p>매수선택권을 부여 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 542 조의 3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p> <p>②~④ (생략)</p> <p>⑤ 임원 또는 직원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 를 초과할 수 없다.</p> <p>⑥~⑨ (생략)</p>	<p>매수선택권을 부여 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 542 조의 3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p> <p>②~④ (동일)</p> <p>⑤ 임원 또는 직원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할 수 없다.</p> <p>⑥~⑨ (동일)</p>	
<p>제 12 조(주식의 소각)</p> <p>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p>	<p>제 12 조 (주식의 소각)</p> <p>(삭제)</p> <p>(신설)</p> <p>제 12 조의 1 (주식의 소각 및 처분)</p> <p>① <u>회사는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 자기사채를 소각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거나, 신규 기술도입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회사의 경영 및 영업과 관련이 있거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경영 안전성을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자에게 재매각을 할 수 있다.</u></p>	<p>조항 삭제 및 조항 신설</p>
<p>제 21 조(소집권자)</p> <p>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p> <p>② <u>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정관 제 35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제 21 조(소집권자)</p> <p>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p> <p>② 소집권자의 유고 시에는 정관 제 35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조문 정비</p>
<p>제 23 조(소집지)</p> <p><u>주주총회는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 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다.</u></p>	<p>제 23 조(소집지)</p> <p><u>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이사회결의에 따라서 그 인접지, 지점 또는 중요 공장 소재지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u></p>	<p>조문 정비</p>

<p>제 24 조(의장)</p> <p>① <u>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u></p> <p>② <u>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제 35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제 24 조(의장)</p> <p>① <u>주주총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대표이사로 한다.</u></p> <p>② <u>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 35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조문 정비</p>
<p>제 32 조(이사의 수)</p> <p>회사의 이사는 3 인이상 10 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 분의 1 이상으로 한다.</p>	<p>제 32 조(이사의 수)</p> <p>① <u>회사의 이사는 3 인이상 10 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 분의 1 이상으로 한다.</u></p> <p>② <u>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을 위하여 제 1항의 규정을 개정 또는 변경하는 안건으로 주주총회가 소집되는 경우 또는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을 위하여 이사해임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가 소집되는 경우에는 상법 및 정관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100분의 70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60이상의 찬성으로 한다.</u></p>	<p>조문 추가</p>
<p>제 34 조(이사의 임기)</p> <p>① <u>이사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u>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p> <p>② <u>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u></p>	<p>제 34 조(이사의 임기)</p> <p>① <u>이사의 임기는 3 년이내로 한다.</u>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p> <p>② <u>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u></p>	<p>조문 정비</p>
<p>제 35 조(이사의 직무)</p> <p><u>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제 35 조(이사의 직무)</p> <p><u>부회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조문 정비</p>
<p>제 36 조(이사의 의무)</p> <p>① ~ ④ (생략)</p>	<p>제 36 조(이사의 의무)</p> <p>① ~ ④ (생략)</p> <p>⑤ <u>이사는 제2항의 선관주의의무 외에, 충실의무, 경업금지, 자기거래금지, 사업</u></p>	<p>조문 추가</p>

	기회유용금지, 위법행위감시 등의 의무를 진다.	
제 39 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u>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u> <u>회일 1 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u> <u>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u> <u>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u> <u>략할 수 있다.</u> ③ ~ ⑤ (생략)	제 39 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장 또는 이사회 <u>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u> <u>이사가 회일 1 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u> <u>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회사 경영</u> <u>상 긴급한 경우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u> <u>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u> <u>수 있다.</u> ③ ~ ⑤ (동일)	조문 정비
제 44 조(대표이사의 직무) <u>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u> <u>의 업무를 총괄한다.</u>	제 44 조(대표이사의 직무) <u>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u> <u>를 총괄한다.</u>	조문 정비
부칙 (생략)	부칙 (현행과 동일) 이 정관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별첨2]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자 약력사항

구분	생년월	성명	약력	최대 주주와의 관계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추천인
사내 이사	1962.07.	권상훈	University of Pennsylvania, Wharton School, MBA 전) City Bank 기업금융 현) Crosby Managing Director	없음	없음	이사회
사내 이사	1961.04.	임인규	서울대학교 경영학석사 전) SJ얼라이어스파트너스 대표 현) 컨티넨탈홀딩스 대표이사	없음	없음	이사회
사내 이사	1970.05.	박종홍	고려대학교 경제학 학사 전) 삼성SDS 전) 씨앤티85 주식회사 전무이사	없음	없음	이사회
사외 이사	1979.01.	정 용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조세법 석사 전) 세무법인 호연 현) 호원세무회계	없음	없음	이사회
사외 이사	1956.06	이기호	명지대학교 증권보험대학원 석사과정 전) 한화그룹 전) 코디웍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현) (주)벡서플라이 감사	없음	없음	이사회
사외 이사	1965.08	임헌벽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전) 경기도청 총량관리팀장 현) 행정사	없음	없음	이사회